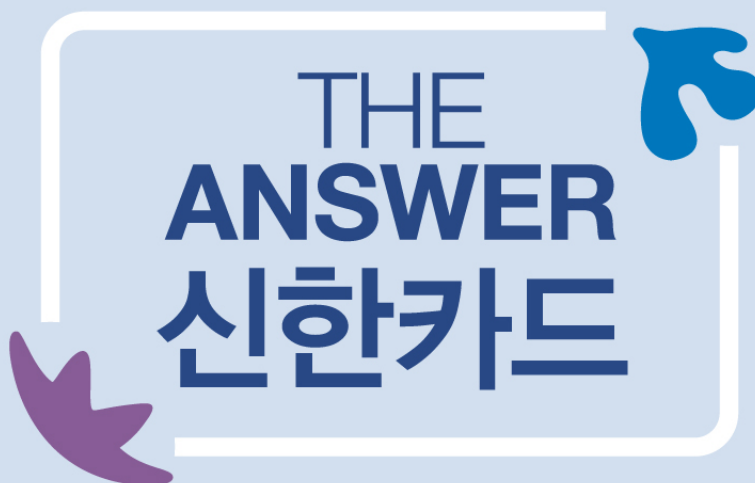




신한금융그룹

무엇이든, 언제든, 어디서든



가 / 맹 / 점 / 신 / 청 / 서

가맹점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신한카드(주) 귀중

※ 제출된 신청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사가 당 가맹점으로부터 취득한 아래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활용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당 가맹점은 귀사가 당 가맹점에 관한 다음의 신용정보를 당 가맹점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 및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서 활용하도록 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 가맹점 식별정보(가맹점명, 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가맹점주소, E-Mail 주소등), 거래내역(거래금액, 승인번호, 거래일시 등), 가맹점 체결 및 해지 기타 신용도의 판단에 필요한 가맹점 신용정보

[제공대상자 및 제공이용목적]

1.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전문협회 등), 신용정보업자(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개인신용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은행, 카드사, 캐피탈사등 금융기관 등) 등에게 제공하여 당 가맹점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제공, 이용하는 경우
2. 공공기관(국세청, 경찰청, 검찰청 등)등에서 정책자료로서 활용하는데 제공, 이용하는 경우
3. 기타 법령등에 의하여 제공, 이용하는 경우

- *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 * 위 사항에 동의하지만 귀 가맹점의 가맹점 계약의 정상 접수가 가능합니다.
- * 가맹점 계약이 연장, 재계약 또는 종료되는 경우에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동의서는 계속 유효 합니다.
- * 상기내용이 변동하는 경우 별도의 통지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기로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사가 당 가맹점으로부터 취득한 아래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활용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당 가맹점은 귀사가 당 가맹점 및 귀사의 회원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당 가맹점에 관한 다음의 신용정보를 아래 기재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아래 기재된 제공대상자에게 제공하고 당해 업체(기관)가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범위내에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대상자 및 제공이용목적에 따른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1. 귀사의 회원(법인·개별카드 사용자를 포함하여 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확인 및 거래와 관련된 분쟁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가맹점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 ▶ 제공·신용정보 : 가맹점 식별정보(가맹점명, 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가맹점주소, E-Mail 주소등)
거래내역 (거래금액, 승인번호, 거래일시 등)
2. "회원"이 본인의 신용카드 등을 본인인 소속된 회사 및 기타 단체(이하 "회사등"이라 한다)의 경비처리 목적으로 사용하여 "회사등"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회사등"이 "회원을" 대행하여 요청하여 제공·이용하는 경우
 - ▶ 제공·신용정보 : 가맹점 식별정보(가맹점명, 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가맹점주소, E-Mail 주소등)
거래내역 (거래금액, 승인번호, 거래일시 등)
3. 귀사가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목적으로 제공, 이용하는 경우
 - 귀사의 신상품 및 제휴상품 소개, 사은행사 및 판촉행사, 신용카드 이용권유, 보험대리점 업무 등 마케팅 활동
 -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위탁보험사의 보험모집 업무 및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제휴보험사의 보험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제공·활용하는 경우
 - 위탁보험사 : LIG손해보험, 신한생명, 삼성화재, 흥국생명, AIG생명, 동부화재, SH&C생명
 - 제휴보험사 : LIG손해보험, 라이나생명, 현대해상, AIG생명, 흥국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 상기 위탁보험사 및 제휴보험사는 보험대리점 신규 또는 해지 등의 계약변경에 따라 추가·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통지하겠습니다.

 - ▶ 제공·신용정보 : 가맹점 식별정보(가맹점명, 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가맹점주소, E-Mail 주소등)
거래내역 (거래금액, 승인번호, 거래일시 등), 가맹점 대표자 식별정보(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4. 귀사가 영위하는 아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업체에게 위탁하여 그 외부업체가 당해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한된 범위내에서 제공, 이용하는 경우
 - ▶ 위탁업무의 예 : DM 또는 E-mail, SMS 제작 및 발송, 전화상담업무, 채권추심업무, 인터넷관련 서비스업무 등
 - ▶ 제공·신용정보 : 가맹점 식별정보(가맹점명, 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가맹점주소, E-Mail 주소등)
거래내역 (거래금액, 승인번호, 거래일시 등), 가맹점 대표자 식별정보(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 *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 * 가맹점 계약이 연장, 재계약 또는 종료되는 경우에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동의서는 계속 유효 합니다.
- * 본 동의서는 선택사항입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에 근거하여 신한금융그룹내 자회사간에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하며, 개인신용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설명 및 교부를 받았습니다.

■ 가맹점 기재사항

사업자등록번호		접수 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간판명	전화번호	
	상 호		
	해외카드 취급시	영문명	회원안내 () -
	업종 및 품목	FAX번호 () -	
E-Mail 주소		홈페이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자택)	
	대 표 자 명	한글	영문
	전화번호(자택)	이동통신 () -	

※ 대표자가 당사의 신용카드회원이고 본 신청서에 의해 대표자의 신상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신용카드회원 상의 신상이 변경 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매입	귀 가맹점의 해외카드 이용분(VISA, MASTER, JCB)에 대하여 전표접수사를 신한카드로 지정하심에 동의하십니까?	동 의	☐
결제 계좌	금융기관명	예 금 주	(법인) 법인명의 계좌 (개인) 대표자 또는 공동대표자 명의 계좌
	계좌번호		

신한카드 주식회사 앞

당사(본인)은 뒷면에 기재된 가맹점 규약을 승인하고, 신한카드(VISA, MASTER, JCB, AMEX카드) 가맹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당사(본인)은 뒷면에 기재된 가맹점규약을 승인하고, 상기 위임대표에 가맹점 신청 및 정보 변경(결제계좌변경, 거래인감변경, 해약, 주소변경 등) 처리 등 가맹점과 관련된 제반행위를 위임하여 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상기 위임대표자와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동의합니다.

(공동대표자 1)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공동대표자 2)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공동대표자 3)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첨부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신분증 사본 1부 ※ 법인의 경우 최근 3개월이내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사용인감계 원본 1부
- 거래통장 사본 1부
- 기타 [허가(신고)증 사본 1부(요식업종) / 공제조합 가입증명서 사본 1부(다단계업종) / 상품권 발행 증빙서류 사본 1부(상품권업종)]

■ 카드사 기재사항

고객상담 구신한카드: ☎1544-8800, 구)LG카드: ☎1544-7000 / 거래승인 구신한카드: ☎1544-8877, 구)LG카드: ☎1544-7200

모집인코드	성명
연락처	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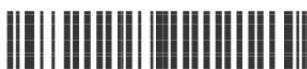
현장실사현황

주소일치여부	일치 ☐ 불일치 ☐ 사유 :
매장	유 ☐ (자가 ☐ 임대 ☐) 무 ☐ (면적 : m ²)
매장관리	(규모, 종업원수, 진열) 양호 ☐ 보통 ☐ 불량 ☐
취급품목	품명(상세기술) :
소재지적합	적합 ☐ 보통 ☐ 부적합 ☐
타카드취급	BC ☐ 국민 ☐ 외환 ☐ 삼성 ☐ 현대 ☐ 기타 ☐
단가(만원)	5 ↓ ☐ 10 ↓ ☐ 20 ↓ ☐ 50 ↓ ☐ 100 ↓ ☐ 100 ↑ ☐
판매형태	일반 ☐ 방문 ☐ 회원제 ☐ 통신 ☐ 기타 ☐
매출규모	월평균 예상 액() 백만원
종합의견	승인 ☐ 보류 ☐ 거절 ☐ (서명)

특기사항 및 약도

가맹점번호	년	월	일
사업자등록증발급일			
수수료율	국내	%	해외
		%	

확정	가입평점	월승인한도	할부개월수
결재	담당	관리자	



제 1조 (용어의 정의)

① 가맹점이란 이 규약을 승인하고 신한카드주식회사(이하 '카드사'라 한다)에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승낙 받은 영소 또는 사실을 말한다. ② 카드로 카드사가 발행하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지칭합니다. ③ 판매한 카드를 이용한 물품(상품권 포함) 또는 용역가치를 의미합니다. ④ 회원이란 카드사의 신용카드 회원, 선불카드 회원 또는 직불카드 회원들을 의미합니다.

제 2조 (판매 매)

① 가맹점은 회원이 해당카드를 제시하고 신용으로 상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결제를 요청하는 경우 이 규약에 따라 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② 가맹점은 카드사와 업무제휴를 한 다른 카드사의 회원에게도 이 규약에 따라 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이 가맹점공동이용제 참가 카드사 회원에 대해 판매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규약에 따릅니다. ③ 가맹점은 카드사와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카드 회원번호를 이용하여 사설물 또는 서비스의 이용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은 카드사와 별도로 약정한 내용을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된 내용에 따라 카드사에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3조 1 (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당해 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이 불확실한 경우 이 규약에 따라 판매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거래의 경우는 카드사와 별도로 합의한 방법을 따릅니다. 1. 카드 상의 서명과 매출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 지 확인 2. 사액이 부채된 카드의 경우 카드에 부착된 사진이 카드로서인지 일치하는 지 확인 3. 카드에 의한 거래금액이 50만원 초과할 경우 카드 회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 여부 ② 가맹점은 회원이 제시한 신용카드에 서명이 없을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추가로 확인하는 등 회원과 카드사에 피해가 없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가맹점은 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판매를 거절 또는 현금으로 요구하거나 회원에게 제1조 제3항의 수표를 전가하는 등 현금거래 고액에 비하여 불합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④ 가맹점은 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거래내용을 받아 매출표에 승인번호와 가맹점명, 가맹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 등 필수기재 사항을 전부 기재하여야 합니다. ⑤ 가맹점은 판매를 요청하여 카드 회원에게 현금을 대출하여 주거나 실제 매출액을 초과하여 거래를 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⑥ 가맹점은 판매로 인한 매출표(매출내역)를 제3자에 인도하거나 제3자가 발행한 매출표를 인수하여 카드사에 제출하여서는 안됩니다. ⑦ 가맹점은 판매로 인한 매출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복사로 발행하여 매출을 가감하여서는 안됩니다. ⑧ 가맹점은 거래관계를 통하여 알게 된 카드사의 회원정보(거래정보 포함)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⑨ 가맹점은 회원이 제시하는 카드가 위법 또는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제작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해당 카드를 취급하여서는 안됩니다. ⑩ 가맹점은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타인 명의로 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⑪ 가맹점은 카드 등의 다른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⑫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등 비대면거래를 특징으로 하는 가맹점은 비대면거래시 거래물품과 거래방식에 따라 카드사에 사전 정한 별도의 추가정보(가맹점명, 전자상거래 및 결제대행(PG)사)를 가맹점 특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⑬ 상품권(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칭하는 제3자(이하 "발행자"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중보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발행자가 상품권 발행자에게서 상품권 위약판매계약을 체결한 업체로서 카드사와 상품권판매계약을 체결한 가맹점 이외에는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판매하여서는 안됩니다. ⑭ 결제결제(PG)업체의 경우에는 본 조 제1항 및 제1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카드사와 별도 체결한 특약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3조 2 (도난·분실 및 위·변조카드의 거래에 대한 책임)

① 가맹점은 도난, 분실 또는 위조, 변조된 카드로 발생한 매출증에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매출건에 대해서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의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카드의 실제사용자가 당해 카드의 영안인 아심을 잃고서도 거래한 경우 2. 카드상 영안인의 성명 및 카드 자체의 형상 등으로 인해 실제사용자와 카드영안인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쉽게 알 수 있음을 경우 3. 카드상 서명과 매출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 경우 4. 가맹점이 도난, 분실 또는 위조, 변조된 카드와 관련된 거래에 관여, 가담 또는 협조한 경우 5. 당해 가맹점의 통상적인 거래관 또는 규모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신용판매매도에 불구하고 신분증 등을 통한 추가적인 본인여부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가맹점의 현저한 부주의로써 도난, 분실 또는 위조, 변조된 카드로 인한 매출과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 7. 카드사가 부당성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응한 경우

제 4조 (카드사 준수사항)

① 카드사는 가맹점이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확인하고 거래승인을 받은 정상적인 판매로 인한 매출표에 대해서는 대금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이 제3조의 규약을 위반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여 회원에게 수표를 전가한 경우에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원이 부당한 수수료의 반환을 위해 카드사 회원이 카드사용을 만장하여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3조 제4항 내지 제4항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대금지급의 금지, 가맹점 계약의 해지 또는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제 5조 (판매매)

① 가맹점은 회원이 정한 카드를 제시하고 판매를 요청하는 경우 카드 조화기(이하 "조화기"라 한다)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카드로부터 거래승인을 받은 후 승인번호를 매출표 소스란에 기재하고 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신용매입금액이 카드사가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는 업종별 1회 신용판매한도 이내인 경우 카드의 거래제한 여부만을 확인한 후 판매할 수 있습니다. ② 가맹점은 제1항의 조화기나 "카드사"로 표시되는 카드의 표시고지나, 사설을 즉시 카드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가맹점은 거래승인을 받은 후 판매를 하지 않을 경우 조화기 또는 기타 외 방법으로 카드사에 거래승인 취소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가맹점은 승인번호, 가맹점명, 가맹점번호,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 매출금액, 카드번호, 카드유지료, 카드유지비 등 필수기재 사항을 매출표에 기재하여 회원으로 하여금 직접 서명하게 하여 동 서명이 카드사의 서명과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판매를 하여야 하며, 발인영의 발인(화환)인 경우에는 당해 카드 소지자의 서명을 기재하게 하여 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⑤ 전항을 이행함에 있어 가맹점은 카드사가 정한 매출표를 사용하여야 하며, 카드를 조화기에 직접 통과시키지 않은 경우, 임프린터를 사용하여 반드시 회원의 성명, 카드번호, 카드유지기간 등을 입힌 전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 카드사와 별도 계약을 맺은 가맹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⑥ 가맹점이 매출표에 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판매금액에 한하며, 현금의 입금, 과거판매대금 등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⑦ 가맹점은 1매의 매출표로 처리하여야 할 거래를 판매일자를 변경하거나 판매대금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매 이상의 매출표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⑧ 가맹점은 매출표상의 금액 또는 제3조 제4항의 필수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매출표를 폐기하고 재작성 하여야 합니다. ⑨ 가맹점은 거래의 취소, 무료, 반물, 철회 등의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할 때에는 즉시 취소 매출표를 작성하고 원래의 매출표를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⑩ 가맹점은 매출표 또는 취소 매출표를 작성하여 그 중 '회원명'은 회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 6조 (할부판매)

① 가맹점은 회원이 정한 카드를 제시하고 판매를 요청하는 경우 카드 조화기(이하 "조화기"라 한다)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카드로부터 거래승인을 받은 후 승인번호를 매출표 소스란에 기재하고 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신용매입금액이 카드사가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는 업종별 1회 신용판매한도 이내인 경우 카드의 거래제한 여부만을 확인한 후 판매할 수 있습니다. ② 가맹점은 제1항의 조화기나 "카드사"로 표시되는 카드의 표시고지나, 사설을 즉시 카드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가맹점은 거래승인을 받은 후 판매를 하지 않을 경우 조화기 또는 기타 외 방법으로 카드사에 거래승인 취소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가맹점은 승인번호, 가맹점명, 가맹점번호,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 매출금액, 카드번호, 카드유지료, 카드유지비 등 필수기재 사항을 매출표에 기재하여 회원으로 하여금 직접 서명하게 하여 동 서명이 카드사의 서명과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판매를 하여야 하며, 발인영의 발인(화환)인 경우에는 당해 카드 소지자의 서명을 기재하게 하여 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⑤ 전항을 이행함에 있어 가맹점은 카드사가 정한 매출표를 사용하여야 하며, 카드를 조화기에 직접 통과시키지 않은 경우, 임프린터를 사용하여 반드시 회원의 성명, 카드번호, 카드유지기간 등을 입힌 전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 카드사와 별도 계약을 맺은 가맹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⑥ 가맹점이 매출표에 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판매금액에 한하며, 현금의 입금, 과거판매대금 등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⑦ 가맹점은 1매의 매출표로 처리하여야 할 거래를 판매일자를 변경하거나 판매대금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매 이상의 매출표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⑧ 가맹점은 매출표상의 금액 또는 제3조 제4항의 필수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매출표를 폐기하고 재작성 하여야 합니다. ⑨ 가맹점은 거래의 취소, 무료, 반물, 철회 등의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할 때에는 즉시 취소 매출표를 작성하고 원래의 매출표를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⑩ 가맹점은 매출표 또는 취소 매출표를 작성하여 그 중 '회원명'은 회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 7조 (신용판매 한도)

① 카드사는 가맹점에 대하여 1회, 1일 또는 월간 신용판매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신용판매한도를 가맹점 또는 동 가맹점을 이용하는 회원의 신용도와 민원발생정도, 카드사의 경영상황, 정책변경 등을 고려하여 카드사가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 8조 (계약의 철회 및 항변)

① 가맹점은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계약에 대한 회원의 청약철회권이 인정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이 철회를 요청한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② 청약철회의 제한에 대한 요건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하며 이의 위반에 대한 입증책임은 가맹점이 부담합니다. ③ 가맹점은 20만원 이상의 할부계약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의 항변을 수 용하여야 합니다. 1. 할부계약이 무료·취소 또는 해지된 경우 2. 목적물과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상상의 인도 등의 사기까지 인도 또는 채취된 지 이한 경우 3. 회원이 가맹점의 하자발생책임을 입증한 경우 ④ 가맹점은 회원이 본 조 제항에 따른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회원에 대한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입하여야 합니다. 만일 가맹점이 대금을 카드사에 환입하지 않은 경우, 카드사는 차회 가맹점에 지급할 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⑤ 카드사는 본 조 제항 내지 제3항의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당해 신용판매 대금의 지급을 유예하거나 이미 지급한 카드사용대금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당한 이유없이 철회권이나 항변권의 수용을 거절할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에 통지하고 해당 매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9조 (매출표의 취급)

① 가맹점은 매출표를 집계표와 함께 판매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원의 철회권, 항변권 행사에 따른 취소매출표는 작성일로부터 3일 이내에 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카드사는 가맹점이 전항의 매출표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태만하여 회원의 항변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가맹점의 매출표 접수를 거부하거나, 차회 지급할 대금 중 매출 상당액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제 10조 (판매대금의 지급)

① 가맹점은 카드사와의 판매대금 결제를 위하여 금융회급기관에 지정 예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② 카드사는 판매대금을 본 조 제항의 예금계좌에 입금합니다. 다만, 입금계좌에 이상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급합니다. ③ 카드사는 가맹점에 대하여 판매대금의 5%이하에서 카드사가 정한 금액을 가맹점 수수료로 징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과 별도 합의된 경우에는 판매대금의 5%를 초과하여 징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가 취소되어 취소매출표가 발행된 경우로서 카드사가 매출처를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카드사는 판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카드사'가 매출처표를 접수한 날로부터 소정의 대금지급주기가 경과한 날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이 휴일일 또는 카드사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또는 카드사 본 조 제항의 금융회급기관의 사정으로 해당일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일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⑤ 카드사는 가맹점이 계약을 맺지 않은 다른 카드사(해)의 카드사, 가맹점 공동이용제에 참가기관 포함의 판매대금에 대하여는 수수료로 별도 대금지급주기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⑥ 카드사는 가맹점이나 카드사의 신용상태, 권리변동 기타 시장 상황에 따라 본 조 제3항의 가맹점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지하기로 합니다. ⑦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에 대하여 제3조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제5조 제항의 사항을 위반하여 동일인물에 대하여 2매이상의 분할처리를 발행하여 인원이 발행한 경우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 규정에 의거 민원 접수시까지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 11조 (판매대금의 환입)

① 가맹점은 카드사에 제출한 매출표가 관계법령이나 이 규약에 위반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있어 조사가 필요 있는 경우 해당 매출표를 반환하여 반환매출표 또는 취소매출표의 대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가맹점은 이 대금을 직접 카드사에 환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카드사가 가맹점에 차회 지급할 금액변위 이내일 경우에는 카드사는 환입할 금액을 공제하고 가맹점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위항과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협회, 국가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카드사의 가맹점 신용관리대금을 대상으로 채권자의 채권개입요 요청이 있는 경우 두 카드사는 가맹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가맹점 또는 가맹점집합인 제3자의 대금지급이 카드사에 대해 채무가 있는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해당 채무금액 만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 12조 (변경통지)

① 가맹점은 카드사에 신고한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E-mail 주소, 예금계좌, 업종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또는 영업권의 양도 기타 주요사항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카드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전항의 신고가 카드사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연락하거나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가맹점에 도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13조 (회원정보의 분봉)

① 회원과 카드에 의한 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맹점은 이의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카드사의 중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의 대상이 되는 거래를 영위하는 가맹점은 관련법령에 의거 회원의 분쟁을 성실하게 해결하여야 합니다. ③ 카드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당해 판매대금의 지급을 유예하거나 이미 지급한 카드사용대금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만일 가맹점이 카드사에 해당 판매대금을 환입하지 않은 경우 카드사는 차회 지급할 가맹점 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 카드사는 거래의 특성상 회원과의 분쟁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맹점에 대해 일정한 담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제 14조 (신용보증)

① 회원과 카드에 의한 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맹점은 이의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카드사의 중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의 대상이 되는 거래를 영위하는 가맹점은 관련법령에 의거 회원의 분쟁을 성실하게 해결하여야 합니다. ③ 카드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당해 판매대금의 지급을 유예하거나 이미 지급한 카드사용대금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만일 가맹점이 카드사에 해당 판매대금을 환입하지 않은 경우 카드사는 차회 지급할 가맹점 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 카드사는 거래의 특성상 회원과의 분쟁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맹점에 대해 일정한 담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제 15조 (계약의 해지 등)

① 카드사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 자격을 일시 정지 시키거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 신용 서류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장기간 비매출로 인하여 가맹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가맹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카드 부정 사용의 경우 4. 가맹점의 장기연락불, 부도, 파산, 회생절차신청, 폐업신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조화기의 무단 대역출·통보비정 등 6. 다른 채무로 인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임의경매 등의 대상이 되거나 기타 가맹점집합인 신용평가사 신용점수에 따라 등록되는 등의 사유로 가맹점의 신용상위화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7. 가맹점을 이용하는 회원의 민원발생 정도가 심각하거나 영업의 특성상 카드사에 대해 판매대금의 지급을 유예하거나 이미 지급한 카드사용대금의 환급을 요청한 경우 ② 가맹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에 계약해지 의사를 1개월 이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카드사가 이 규약을 위반한 경우 2. 영업일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이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6조 (가맹점 비치 및 표시)

① 가맹점은 카드사로부터 각종 표지물 및 제정표 등을 대여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가맹점은 점포내외의 잘 보이는 곳에 이들을 비치하여야 표시류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③ 가맹점은 이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대여받은 각종 표지물 및 기타 교부받은 제정표 등을 원상태로 반환하고 판매와 관련된 모든 광고 및 표시물을 즉시 제거하여야 합니다.

제 17조 (규약위반시의 책임)

① 회원과 카드에 의한 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맹점은 이의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카드사의 중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계약에 대한 회원의 청약철회권이 인정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이 철회를 요청한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③ 청약철회의 제한에 대한 요건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하며 이의 위반에 대한 입증책임은 가맹점이 부담합니다. ④ 가맹점은 20만원 이상의 할부계약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의 항변을 수 용하여야 합니다. 1. 할부계약이 무료·취소 또는 해지된 경우 2. 목적물과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상상의 인도 등의 사기까지 인도 또는 채취된 지 이한 경우 3. 회원이 가맹점의 하자발생책임을 입증한 경우 ④ 가맹점은 회원이 본 조 제항에 따른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제 18조 (회계처리 및 유효기간)

이 규약은 가맹점이 이에 기명날인하고 카드사가 승인한 때로부터 효력 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다만 쌍방으로부터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신청이 없을 때는 만료일로부터 1년 씩 유효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19조 (신용정보제공 등)

① 카드사는 정당한 카드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맹점의 제 정보를 신용정보기관과 관계기관 및 업계에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이에 동의합니다. ② 가맹점과 회원이 카드 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의 정보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이 분쟁과 관련하여 회원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카드사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회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카드사는 거래의 특성상 회원과의 분쟁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맹점에 대해 일정한 담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이에 동의합니다.

제 20조 (규약변경통지)

이 규약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까지 가맹점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가맹점이 적용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는 변경된 규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21조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22조 (관할법원)

이 규약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